

## ◆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
-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제출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 복지지원법

[제정 2005.12.23 법률 제7739호]

<한시법:2010.12.24>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함 (안 제4조 제3항)
- 기존 실무협의체가 긴급복지지원법 이 정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행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6항 및 제7항)
-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정함(부칙)

## 【 검토결과 】

-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 실로 인한 생계곤란과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대행토록하여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같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같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을 심의, 의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조기에 지원코자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흡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이 한시법으로 2010, 12, 24 일까지 이므로 본 조례에서도 안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